

6. 農地法 施行規則中 改正令

農林部令 第1,247號 1996. 12. 31

주요 골자

- 가. 농지조성비 수납기관은 현재 농업협동조합 등 3개 농수산관련 협동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이를 우체국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여 지로납부제도를 활용하도록 함(제39조).
- 나. 준보전임지를 70퍼센트 초과 활용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농지조성비를 면제하는 사업의 범위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정함(제44조의 2).

개정 이유

농지조성비의 납부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지조성비의 수납제도를 개선하고, 준보전임지를 70퍼센트 이상 활용하는 농지조성비면제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농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제3호 중 “거주지가 다른 경우”를 “거주지가 다른 농업인의 경우에”로 한다.

제37조 제3호 나목 중 “사전결정을 한 날,”을 삭제한다.

제38조 제2항 중 “별지 제35호 서식”을 “별지 제34호 서식”으로 하고, 동항 중 “부과명세서 및”을 삭제한다.

제39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농어촌진흥공사는 농지조성비가 납입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6호의 2 서식에 의하여 관할청에 농지조성비의 납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2조 제2항 중 “수납기관에”를 삭제하고, 동조 제4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농지조성비자진납부수납통지서 등을 확인하여”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44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 2(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조성비의 면제대상사업) 영 제57조와 영 별표 2 제15호의 2에 의하여 사업부지의 총면적중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 농지조성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또는 아파트 지구개

발사업

3.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 설치사업
4.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의 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 단지조성사업
6.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조성사업
7.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조성사업
8.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9.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농지를 전용하는 사업. 다만, 관광지조성사업·관광단지조성사업·골프장건설사업·스키장건설사업 및 유원지설치사업이나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제 17호 서식·별제 제18호 서식 및 별지 제3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 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3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36호의 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1호 서식 및 별지 제4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택회보